

제주지방법원 2020. 6. 9 선고 2020가단36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변론 종결2020. 5. 26.

판결 선고2020. 6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4. 4. 25. 접수 제204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심병직

별지